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대한민국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우리나라 국방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45세의 외국인
- ② 외국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25세의 대한민국 국민
-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62세의 대한민국 국민
- ④ 영화·문화·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

문 2. 甲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장이며, 甲의 업체는 주무부장관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甲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甲의 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경우, 甲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甲이 고지된 임무에 관하여 작성한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권한 또는 지위와 그 해당기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기관 - 국무총리
- ㄴ.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- 국무총리
- ㄷ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정부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 - 국무총리
- ㄹ.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권한 - 행정안전부장관
- ㅁ. 비축명령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확인·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권한 - 주무부장관

- ① ㄱ, ㄴ
- ② ㄷ, ㅁ
- ③ ㄱ, ㄷ, ㄹ
- ④ ㄴ, ㄹ, ㅁ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·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은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- ②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어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비상대비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훈련이 면제되나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은 훈련이 면제되지 않는다.

